

## 행정사실무법(제3회)

1. A시는 2014. 5. 30. 구(舊) 도심지의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공모하였다. 이 공모에는 甲, 乙, 丙 3개 업체가 지원하였다. 공모심사 결과 乙이 사업자로 선정되고, 甲과 丙은 탈락하였다. 甲은 2015. 5. 4. 乙이 해당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부족하고 사업자 선정과정도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, A시장에게 ① 심사위원별 평가점수, ② 심사위원 인적 사항 및 ③ 乙업체의 재정상태와 사업실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. 그런데 A시장은 2015. 5. 18. 위 청구 중 ③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, ①과 ②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이라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고, 같은 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. 甲은 A시장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위법·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. 6. 15.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았다. 이에 甲은 2015. 8. 31. A시장을 상대로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.

위 행정심판 청구요건의 적법여부 및 A시장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. (40점)

2. 비송사건절차에서 항고의 의의 및 종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. (20점)

3. 비송사건 관할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20점)

- (1) '토지관할'과 '우선관할 및 이송'에 관하여 설명하시오. (15점)
- (2) 관할법원의 지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. (5점)

4. 행정사법 제31조(감독상 명령 등)에 따른 '장부 검사'와 제30조(자격의 취소)에 따른 '자격취소'에 관하여 설명하시오. (20점)

## 문제1.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

### 1. 문제의 소재

#### (1) 논점의 정리

- ① 취소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심판의 대상이 처분에 해당하여야 하며,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청구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
- ② 이 사례에서는 甲의 취소심판청구가 적법한지와 A시장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이다.

#### (2) 논의의 전개

이하에서 취소심판에 대하여 설명하고, 청구요건의 적법여부 및 A시장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겠다.

### 2. 취소심판

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.

### 3. 청구요건의 적법여부

#### (1) 처분

- 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.
- ② 거부처분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일 것,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, 신청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#### (2) 청구인적격

-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, 처분의 집행,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.

#### (3) 청구기간

- ①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,

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

②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.

#### (4) 소결

① 거부처분도 처분이므로 A시장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.

② 甲에게는 ①과 ②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있으나, A시장이 ③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③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.

③ 甲은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.

④ 따라서 甲의 취소심판청구는 ③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청구의 적법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청구이다.

### 4.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적법여부

#### (1) 정보공개

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대상이 된다.

#### (2) 소결

甲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①과 ②는 비공개대상 정보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고, ③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므로 A시장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.

### 5. 사례의 해결

① 甲의 취소심판청구는 ③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청구의 적법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청구이고, A시장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.

②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는 ③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요건심리 결과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인 각하재결을 하여야 할 것이고, ①과 ②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甲의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재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.

## 문제2. 항고의 의의 및 종류

### 1. 항고의 의의

항고는 상급법원에 대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의 취소·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이다.

### 2. 항고의 종류

#### (1) 보통항고

- ① 보통항고는 그 제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항고로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.
- ② 비송사건에서의 항고는 보통항고가 원칙이다.

#### (2) 즉시항고

- ① 즉시항고는 그 제기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항고로서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② 즉시항고는 법률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다.

#### (3) 재항고

- ① 재항고는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이다.
- ② 재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·법률·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.

#### (4) 특별항고

- ①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,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·규칙·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제기하는 항고이다.
- ②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### 문제3의1. 토지관할과 우선관할 및 이송

#### 1. 서설

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처리하느냐의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하며, 심급관할, 사물관할, 토지관할이 있다.

#### 2. 토지관할

##### (1) 의의

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에 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.

##### (2) 원칙

① 비송사건절차법은 토지관할에 관하여 원칙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각종의 사건마다 당사자와 법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토지관할을 규정하고 있다.

② 토지관할의 표준은 사람의 주소지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물건의 소재지, 채무이행지, 소송계속지 등 매우 다양하다.

##### (3) 특칙

①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.

②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.

③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.

#### 3. 우선관할 및 이송

##### (1) 우선관할

관할법원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. 이렇게 정해지는 관할을 우선관할이라 한다.

##### (2) 사건의 이송

우선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데, 이를 사건의 이송이라 한다.

### 문제3의2. 관할법원의 지정

#### 1. 의의

관할법원의 지정이란 법원의 관할지역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여러 개의 법원의 토지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관할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.

#### 2. 절차

- ①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한다.
- ②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.

#### 문제4. 장부 검사와 자격취소

##### 1. 서설

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를 말한다.

##### 2. 장부 검사

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.

##### 3. 자격취소

###### (1) 내용

-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사가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###### (2) 사유

-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
- ②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
- ③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
- ④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